

#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2015. 3

비씨카드주식회사

##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본인은 이 연차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중요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허위가 없고, 기재된 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3월 2일

비씨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서준희 (서명)

## 목 차

1. 지배구조 일반 .....	1
2. 이사회 .....	4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6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18
5.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19
6. 감사위원회 .....	20
7. 보상체계 및 성과보상위원회 .....	27
8. 리스크관리위원회 .....	38
9. 기타위원회 .....	42
10. 경영관리협의회(금융지주회사의 경우) .....	44
11. 리스크관리협의회(금융지주회사의 경우).....	45
12.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46
13. 주주총회.....	53
14.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56
15.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57
첨부. 정관.....	58

# 1. 지배구조 일반

##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비씨카드주식회사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씨카드주식회사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 2분의 1을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말 현재 사내이사 2인 및 사외이사 4인, 기타 비상무이사 2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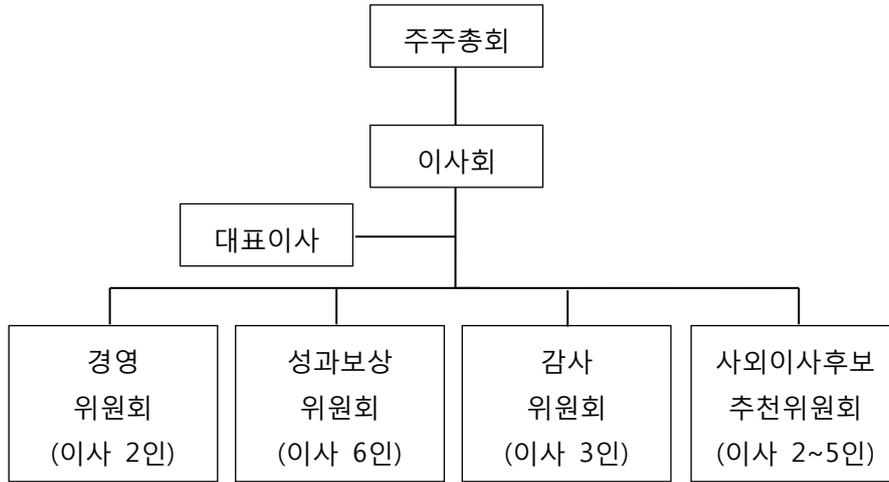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안에서 상호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한으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고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 등 주요 내규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 상황을 수시공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씨카드 홈페이지 <http://www.bccard.com>)

비씨카드주식회사는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기 언급된 지배구조 원칙 및 정책에 대해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나. 지배구조 현황

### (1) 조직도



㉞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13년 3월7일 최초 구성하여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후보 추천 후 2014년 3월에 위원 전원 퇴임. 2014년 중 변경되는 사외이사가 없어 위원회 구성 안함.

### ※ 이사회內위원회 구성

구분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경영위원회	2인	0인	0인
성과보상위원회	0인	4인	2인
감사위원회	1인	2인	0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0인	0인	0인

### (2) 지배구조의 특징

비씨카드주식회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와 비율이 4명, 2분의 1로 여신금융전문업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2014년 3월부터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하여 운영 중이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의 2분의 1을 차지함으로써 이사회에 대한 견제기능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비씨카드주식회사는 경영위원회, 성과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총 4개의 이사회내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되어,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지배인 선,해임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성과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도 경영목표 확정, 경영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상제도의 설계, 운영, 지급결정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 되어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이름/상임,사외, 비상임여부)	관련규정
이사회	최고상설 의사결정기구	4/8	서준희(상임)	정관 및 이사회 규정
경영위원회	회사 주요사항의결	0/2	서준희(상임)	정관,이사회규정 및 경영위원회 규정
성과보상 위원회	경영목표 확정, 경영평가,인센티브 등 성과보상제도 운영	4/6	한훈(비상임)	정관,이사회규정 및 성과보상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2/3	표학길(사외)	정관,이사회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	0/0		정관,이사회규정 및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다. 관련 규정

- 첨부 1. 비씨카드주식회사 정관

## 2. 이사회

### 가. 역할(권한과 책임)

#### (1) 총괄

비씨카드주식회사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진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합니다.

#### (2) 구체적 역할 (이사회규정 제5,6조)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합니다.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에 참가할 수 없고,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비씨카드주식회사의 성과보상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사의 경영목표를 확정하고 평가합니다. (성과보상위원회 규정 제7조).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성과보상위원회는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경영목표·전략은 2014년 12월 경영진에서 초안을 마련하여 성과보상위원진에게 사전보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3~4월 개최될 15년도 2차 성과보상위원회를 통해 15년 경영목표를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 분기별 결산보고를 통하여 2015년 경영목표·전략에 대한 중간점검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나) 정관 변경

비씨카드주식회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상법 §393조의2②, 이사회규정 제5조)

이에 따라 최근에는 2014년 3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정관 변경안을 의결하였으며, 2014년 3월 개최된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안이 승인됨에 따라 등기부등본 변경 등 회사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 \* 주요 내용

- 자문기관 운영 관련 명칭 변경 ('고문' → '자문역')

#### \* 변경 목적

- 자문역 운영 관련 용어 변경

#### (다) 예산 및 결산승인

비씨카드주식회사 이사회는 회사의 연간 경영계획(예산 포함)을 승인하며, 이에 따라 2015년 경영 계획은 2015년 2월 제2차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2015년 총 관리비 예산은 1,607억 원으로 2014년 1,596억 원 대비 11억 원을 초과 편성하였습니다.

14년 결산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14.3월 개최된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에서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거친 최종 재무제표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당기순이익 (별도기준 1,039억원, 연결기준 1,280억원)
- 총자산 (별도기준 29,239억원, 연결기준 29,647억원)
- 배당 (보통주 액면 배당률 71%, 312억원)

####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비씨카드주식회사 이사회는 지점, 사무소 등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대해 부의 의결합니다(상법제393조①항, 이사회규정 제5조①항17호).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해산, 영업양도, 양수,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이사회 규정 제5조①항1호)

#### (마) 지배구조 원칙 · 정책의 수립 · 평가

비씨카드주식회사 이사회는 지난 1년 간 대표이사 및 이사회회장 선임,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정기주주총회 소집 등을 승인하여 상법에서 정하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

#### (바) 이해상충행위 관리 · 감독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을 위하여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상의 기준에 따른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일상감시제도를 통하여 대주주·임원과의 거래 등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 검토하여 회사의 이익보호에 반하지 않도록 감소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으로 제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회사의 내부통제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은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시, 점검, 조사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시정요구 등 내부통제체제를 총괄합니다. 내부통제는 준법감시인이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통제 범위, 통제 정도 및 통제 주기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은 연 1회 이상 내부통제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 리스크관리기준 수립·평가

비씨카드주식회사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5조(부의 사항)에 의거하여, 리스크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및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반기별(4/11月) 정기 이사회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결과보고를 받았으며, 4월에는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안),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경영승계업무

비씨카드주식회사 이사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의거 2015년 상반기 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 규정 제정을 통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입니다.

## 나. 구성(이사)

(1) 총괄

비씨카드주식회사는 임원으로 3인 이상의 이사를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합니다. (정관 제23조). 단, 사외이사는 상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회사의 자산규모,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여러 중요사항들을 적절하게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합니다.

2014년 말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대표이사 및 상근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 1명의 사임에 따라, 신임 기타비상무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2014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임 대표이사 사임 및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대표이사 및 1명의 기타 비상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사내이사(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포함) 및 사외이사 모두 최초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하며, 재임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합니다.

이사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및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는 경영분야 전문가이면서 현재 회사의 사장으로 재임 중인 서준희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2014년 3월 선임되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직위	담당업무	임기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서준희	사내이사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14.3.25~ '14.12.31	경영위원회 위원장
남동균	사내이사	상근감사위원	'13.3.26 ~ '15.3월 정기주총	감사위원회 위원
이종호	사내이사	이사회 의장	'11.3.29~ '14. 3.28	
이강태	사내이사	대표이사	'12.8.6 ~ '14.12.31	경영위원회 위원 * '14년 2월 중도 퇴임
한훈	기타 비상무이사		'14.2.28~ '16.3월 정기주총	성과보상위원장 경영위원회 위원
신응환	기타 비상무이사		'14.3.25~ '16.3월 정기주총	성과보상위원회 위원
김일영	기타 비상무이사		12.1.13~ '14.2.7(사임)	성과보상위원회 위원 *14년 2월 중도 퇴임
손경익	기타 비상무이사		'11.2.11~ '14.3월 정기주총	성과보상위원회 위원
김종화	사외이사		'13.3.26~ '15.3월 정기주총	성과보상위원회 위원
이천표	사외이사		'13.3.26~ '15.3월 정기주총	성과보상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표학길	사외이사		'13.3.26~ '15.3월 정기주총	감사위원장 성과보상위원회 위원
한영근	사외이사		'13.3.26~ '15.3월 정기주총	성과보상위원회 위원
배철호	사외이사		'12.3.28~ '14.3월 정기주총	감사위원장 성과보상위원회 위원

성명	경력
서준희	- 전 삼성사회봉사단 사장 <'12-'14> - 전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 <'09-'11>
남동균	- 대구광역시 정무부시장 <'08-'10> - 대통령비서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07-08>
이종호	- KT 캐피탈 대표이사 <'09-'11> - LG 카드 대표이사 <'04-'07>
이강태	- 하나 SK 카드 사장 <'09-'11> - 삼성테스코 CIO <'02-'09>
한훈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이사장 <'12-'14> - KT 네트워크 대표이사 사장 <'09-'11>
신응환	- 유진그룹 회장실 사장 <'11-'12> - 삼성카드 부사장 <'09-'10>
김일영	- KT Corporate Center 센터장 <'11-'13> - KT 그룹전략 CFT 장 <'09-10'>
손경익	- NH 농협 카드 분사장 <'11-'14> - NH-CA 자산운용 마케팅 총괄 전무 <'10-'11>
김종화	-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12-현재> - KB 부동산신탁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장 <'09-'12>
이천표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명예교수 <'79 - 현재> - 한국산업은행 사외이사 <'11-'13>
표학길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13-현재> - 서울대 국가경쟁력연구센터 소장 <'02-'13>
한영근	- IBK 자산운용 대표이사 <'10-'13> - IBK 기업은행 개인고객본부장 <'06-'08>
배철호	-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08-'09> -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05-'08>

## 다. 활동내역

### (1) 활동내역 개요

2014년 총 10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87%입니다. 사외이사 각 1인 불참 하에 총 3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나, 의결 성원이 충족되어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및 의결이 가능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지닌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활발한 토의가 가능했고, 그 결과 2014년 한 해 52건의 보고 및 의결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 (2) 회의 개최 내역

(가) 제1차 이사회 : 2014. 2. 6 (10 : 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종호	이강태	남동균	손경익	김일영	배철호	김종화	이천표	표학길	한영근	
1. 이사성명											
2. 참석여부	참석	불참	참석	불참	불참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이의 없음										-
4. 의결안건											
가. 이사회 관련 규정 개정(안)	찬성	-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나. 이사 선임(안)	찬성	-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다. 제32기 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	찬성	-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나) 제2차 이사회 : 2014. 3. 7 (10 : 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종호	이강태	남동균	손경익	한훈	배철호	김종화	이천표	표학길	한영근	
1. 이사성명	이종호	이강태	남동균	손경익	한훈	배철호	김종화	이천표	표학길	한영근	
2. 참석여부	참석	불참	참석	불참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 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
4. 의결안건											
가. 제31기 재무 제표 승인(안)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31기 영업 보고서 승인(안)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이사 선임(안)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14년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정관 변경(안)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31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안)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차 이사회 : 2014. 3. 25 (16 : 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서준희	남동균	김종화	이천표	표학길	한영근	한 훈	신응환		
1. 이사성명	서준희	남동균	김종화	이천표	표학길	한영근	한 훈	신응환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대표이사사장 선임및 보수지급(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회 의장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감사위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14년도 제2차 주요주주 등과 의 거래 승인(안)	찬성	가결								
마. 지점 명칭 변경(안)	찬성	가결								

(라) 제4차 이사회 : 2014. 3. 31 (16 : 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서준희	남동균	김종화	이천표	표학길	한영근	한 훈	신응환	
1. 이사성명	서준희	남동균	김종화	이천표	표학길	한영근	한 훈	신응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
4. 의결안건									
가. 조직 개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4년 경영 임원의 수 및 보수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4년 제1차 성과보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13년도 전문 임원 운영현황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5차 이사회 : 2014. 4. 28 (16 : 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서준희	남동균	김종화	이천표	표학길	한영근	한 훈	신응환	
1. 이사성명	서준희	남동균	김종화	이천표	표학길	한영근	한 훈	신응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이의 없음								-
4. 의결안건									
가.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4년도 리스크 관리 기본계획(안)	찬성	가결								
다. 인터넷시스템 마 이그레이션 추진(안)	찬성	가결								
라. 2014년도 제3차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안)	찬성	가결								
마.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안)	찬성	가결								

바) 제6차 이사회 : 2014. 6. 17 (15 : 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서준희	남동균	김종화	이천표	표학길	한영근	한 훈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불참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이의 없음								-
4. 의결안건									
가. 영업센터 재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가결
나. 오라클 S/W 라이선스이슈해결추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가결
다. 2014년도 제4차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가결

사) 제7차 이사회 : 2014. 7. 18 (11 : 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서준희	남동균	김종화	이천표	표학길	한영근	한 훈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
4. 의결안건									

가. 2014년도 제5차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안)	찬성	-	가결						
-------------------------------------	----	----	----	----	----	----	----	---	----

아) 제8차 이사회 : 2014. 8. 28 (11 : 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서준희	남동균	김종화	이천표	표학길	한영근	한 훈	신응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이의 없음								-
4. 의결안건									
가. 조직 개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4년도 제6차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제9차 이사회 : 2014. 11. 19 (11 : 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서준희	남동균	김종화	이천표	표학길	한영근	한 훈	신응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이의 없음								-
4. 의결안건									
가. 2014년도 제7차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제10차 이사회 : 2014. 12. 22 (12 : 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서준희	남동균	김종화	이천표	표학길	한영근	한 훈	신응환	
1. 이사성명	서준희	남동균	김종화	이천표	표학길	한영근	한 훈	신응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
4. 의결안건									
가. 2015년도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조직 개편(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라. 평가

### (1)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공정성, 전문성 등의 활동평가와 기업과 주주 등을 위한 의사결정 노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가. 권한과 책임

비씨카드주식회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3조,제8조 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려는 원칙을 가지고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하여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이사회 구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의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 및 사외이사 평가방법, 주기 등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및 투철한 책임의식 등을 겸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비 후보자를 추천받아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예비후보자를 탐색하여 후보군을 확정하고 이사회에 후보군 관리내역을 연 2회 보고하는 등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사외이사 내부평가를 실시하여 사외이사 평가를 반영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활동사항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받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재선임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외이사 후보군과 재선임되는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 **다.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여전법 제50조4에 의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외이사의 수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 위원은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문화·예술 등의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검증된 사외이사후보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 **라. 활동내역 및 평가**

비씨카드주식회사는 2014년에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 내역이 없습니다.

##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 가. 최고 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비씨카드주식회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경영승계절차 개시, 비상상황 시 경영승계 절차 등입니다. 최고경영자경영승계 규정은 이사회가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나. 최고 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해당사항 없음 (규정 제정 중)

### 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해당사항 없음 (규정 제정 중)

### 라.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해당사항 없음 (규정 제정 중)

###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해당사항 없음 (규정 제정 중)

###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해당사항 없음 (규정 제정 중)

## 5.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 6. 감사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비씨카드주식회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감독 뿐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경영전문가, 재무/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 (2) 구체적 역할

#####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 ① 이사회 안건에 대한 감독

비씨카드주식회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관 제5장36조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14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상근감사위원은 2014년에 총 10회의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 진행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제412조)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 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2조)

또한 회사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 3조)

#####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외감법제4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4년 2월 제3차 감사위원회에서 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

한영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전문인력 보유규모 및 감사 수행의 외적 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형회계법인 중 최종적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7조)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 업무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이에 감사위원회는 2014년 상근감사위원으로부터 일상업무에 관한 직무감사 등 총 9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 (라) 재무제표 검토 등

비씨카드주식회사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고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외감법 시행령제7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5년 2월 제32기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외부회계전문가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제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이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매 사업 연도마다 보고합니다.(외감법 제2조의2)

이에 2015년 2월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2015년 2월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4년 2월, 2014년 12월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준법감시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합니다.  
이에 따라 비씨카드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하였으며, 위원 중 2명은 사외이사이고, 1명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였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표학길	사외	위원장	'13.3.26	15.3월 정기주총
이천표	사외	위원	'13.3.26	15.3월 정기주총
남동균	상임	상근감사위원	'13.3.26	15.3월 정기주총

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 남동균

(3)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4년에는 총 10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원의 평균 참석율은 90%로 충실히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1차 감사위원회 : 2014. 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배철호	남동균	표학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이의 없음			-
4. 의결 안건				
가. 2013년도 감사결과 보고(안)	찬성	찬성	-	가결
나. 2013년도 하반기 내 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안)	찬성	찬성	-	가결

(나) 제2차 감사위원회 : 2014. 2.2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배철호	남동균	표학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
4. 의결 안건				
가. 2013년도 감사결과 보고(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3차 감사위원회 : 2014. 3.7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배철호	남동균	표학길	-
2. 참석여부	불참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
4. 의결 안건				
가. 제31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안)	-	찬성	찬성	가결
나. 외부 감사인 선임의 승인(안)	-	찬성	찬성	가결

라) 제4차 감사위원회 : 2014. 3.2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배철호	남동균	표학길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
4. 의결 안건				
가. 주주총회 의안, 서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진술 위임(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5차 감사위원회 : 2014. 3.2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배철호	남동균	이천표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
4. 의결 안건				
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6차 감사위원회 : 2014. 3.3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표학길	남동균	이천표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
4. 의결 안건				
가.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제7차 감사위원회 : 2014. 4. 2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표학길	남동균	이천표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이의 없음			-
4. 의결 안건				
가. 금융감독원 부문 검사 결과 조치사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제8차 감사위원회 : 2014. 8. 2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표학길	남동균	이천표	-
2. 참석여부	불참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이의 없음			-
4. 의결 안건				
가. 2014년도 상반기 내 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안)	-	찬성	찬성	가결

자) 제9차 감사위원회 : 2014. 12. 1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표학길	남동균	이천표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이의 없음			-
4. 의결 안건				
가. 2015년도 연간감사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제10차 감사위원회 : 2014. 12. 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표학길	남동균	이천표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
4. 의결 안건				
가.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보조조직은 감사실 내 감사1팀, 감사2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14년 12월 기준 총 인원은 8명입니다.

- 감사위원회 주요 보고 내용

일자	대상	보고 및 지원내용
'14.2.06	제1차감사위원회	'13년도 감사결과 보고의 건
'14.3.07	제3차감사위원회	제31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의 건
'14.4.25	제7차감사위원회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
		'14년도 1분기 감사실시 현황 보고의 건
'14.8.28	제8차감사위원회	'14년도 2분기 감사실시 현황 보고의 건
'14.12.15	제9차감사위원회	'15년도 연간감사계획(안)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서
		'14년도 3분기 감사실시 현황 보고의 건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보고의 건

- 외부전문가 활용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7. 보상체계 및 성과보상위원회

### 가. 권한과 책임

#### (1) 총괄

비씨카드주식회사는 보상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성과에 따른 리스크구조와의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성과보상위원회는 이사회내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상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보상위원회 내부규정으로 『성과보상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과보상위원회는 당사 『이사회규정』 제7조1항3호를 그 근거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이 되는 해당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2015년 상반기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위원의 임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전원이 성과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성과보상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비씨카드주식회사 성과보상위원회는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차 성과보상위원회에서 경영진 및 임직원의 보상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 상반기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내용에 의거하여 성과 총 보상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변동보상 관련 이연기간, 이연지급액 비중 등에 대한 규정 반영을 검토,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비씨카드주식회사는 보상의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을 상시 점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아울러 2015년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동보상의 원칙과 이연 지급, 지급형태 및 지급방식 등 내용 전반에 관하여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추 계획입니다.

다) 금융회사의 보상체계가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상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비씨카드주식회사는 회사의 보상정책 및 운영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향후 신설될 보상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할 예정입니다.

(라)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제44조에 따른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비씨카드주식회사는 성과보상위원회에서 경영진과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 체계 설계·운영 및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2014년 3월 31일 개최된 성과보상위원회에서 2013년을 평가기간으로 변동보상의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투자금융, 파생상품 딜링 등 특정업무 종사자가 없습니다.

(2013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경영진	16	사장,부사장 등
특정직원	-	-

(마) 성과보상위원회 보상정책의 적용 범위

비씨카드주식회사의 보상정책은 국내,외 모든 사업부, 지점 등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나. 구성(성과보상위원회위원)

### (1) 총괄

비씨카드주식회사는 성과보상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성과보상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 이사회 소속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성과보상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4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

당사는 2014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성과보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 2014년 정기 주주총회 이후

성명	직명	사외이사여부	회계재무분야 종사경험	약력
한훈	기타 비상무이사	해당없음	유	KT경영기획 부문장
신응환	기타 비상무이사	해당없음	유	농협은행 NH카드분사장
김종화	사외이사	해당	무	덕성여대 명예교수
이천표	사외이사	해당	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표학길	사외이사	해당	무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영근	사외이사	해당	유	IBK 자산운용 대표이사

## 다. 활동내역

### (1) 활동내역 개요

2014년에는 총 2회의 성과보상위원회가 개최 되었고, 위원의 평균 참석율은 100%로 충실히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1차 성과보상위원회 : 2014. 3. 3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한훈	김종화	이천표	표학길	한영근	신응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
4. 의결 안건							
가. 2013년도 경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차 성과보상위원회 : 2014. 5. 2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한훈	김종화	이천표	표학길	한영근	신응환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
4. 의결 안건							
가. 2014년도 경영 목표 확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성과보상위원회 및 보상체계 관련 주요사항**

(1) 성과보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비씨카드주식회사 성과보상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경영진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게 대한 보상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2) 성과보상위원회의 보상정책 관련 의사결정 절차

위원회는 최소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안건 및 토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회의의 개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은 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 (3)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위원회는 보상체계의 적정성과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외부자문 요청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2014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4) 보상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비씨카드주식회사는 2014.5.31 성과보상위원회 결의에 의거하여 등기임원 및 경영 임원이 형사 입건/기소를 당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변동보상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5)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 현황

비씨카드주식회사의 리스크관리 부서는 리스크관리총괄 산하의 리스크관리팀입니다. 2014년 12월말 기준 총 3명이며, 평균 근속년수는 12.5년으로 전문 역량을 충분히 보유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준법감시부서는 준법감시인 산하의 컴플라이언스팀이며 2014년 12월 말 기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업무 평균근속년수는 15.5년으로 전문 역량을 충분히 보유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말 기준)

분류	인원수	비고
리스크관리팀	3명	
컴플라이언스팀	4명	

(6)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상체계의 독립성

비씨카드주식회사의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직원들은 개인 업무성과 목표에 대해 고유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달성도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7)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비씨카드주식회사는 성과보상위원회의 결의 대상이 되는 경영진 및 일반직원의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8) 일반직원의 보상체계

(가) 성과주의 보상제도

비씨카드주식회사는 직원의 성과몰입을 위해 개인 성과 기반의 연봉제와 개인 및 조직 성과와 연계한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비씨카드주식회사는 일반 직원에 대해서 직무가치 및 성과와 연계한 연봉 인상을 적용 및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정성 수당 항목의 단순화 및 지급기준 명확화를 통해 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1)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① 보상체계 설계시 고려해야 할 성과지표 설정 원칙

비씨카드주식회사는 장기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설정시 수익성 지표 이외에 영업지표, 윤리경영 지표등을 측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15년부터 재무건전성, 자산건전성, 고객만족도 지표를 추가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② 주요 측정지표

1. 수익성 지표 : 영업수익, 영업이익 EBITDA
2. 영업 지표 : MS, 이용실적(신용카드 매입)
3. 경영관리 품질 : 윤리경영 이행도, 경영관리 제도 개선도 등
4. 추가 보완 예정 지표 : 조정자기자본비율, 국가고객만족도, 연체율 등

## ③ 보상의 연계방법

상기 지표 측정을 통해 경영진의 인센티브 지급률을 산정하되, 경영관리 품질 및 윤리경영 이행도 등을 평가하는 지표도 평가에 반영하여, 이를 보상기준에 적용 합니다.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내용에 의거하여 추가적 보완 예정 지표도 평가 항목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④ 측정지표와 회사 전체 리스크관리 체계의 연계방법

비씨카드주식회사의 성과보상체계에 반영될 예정인 조정자기자본비율 및 연체비율은 당사의 주요한 리스크관리 지표입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을 통하여 회사 자본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체비율을 통하여 당사 여신자산의 건전성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경우 위의 리스크관리 지표들이 성과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성과평가의 결과가 보상체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2)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 ① 회사 전체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영업수익, 영업이익, EBITDA)를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재무 지표로는 윤리경영이행도, 경영관리 제도 개선도, M/S 등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각 개인에 대해 위 성과측정치표를 주요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사의 특정업무 종사자가 없어 해당 성과측정치표는 없습니다.

## ③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상의 연계방법

수익성, 영업, 경영관리 품질 지표 측정을 통해 경영진의 인센티브 지급률을 산정하되, 경영관리 품질 및 윤리경영 이행도 등을 평가하는 지표도 평가에 반영하여, 이를 보상기준에 적용합니다.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내용에 의거하여 조정자기자본비율 및 연체비율 등 추가적 보완 예정 지표도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보상기준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 ④ 성과미달시 보상을 조정하는 방법

성과미달과 일정 달성율에 미달할 시에는 별도의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보상 조정 기준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이연 및 지급확정 기준

### ① 변동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비씨카드주식회사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연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5년 신설되는 보상위원회에서 변동보상 관련 이연기간, 이연지급액 비중 등에 대해 규정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② 장기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이연된 보상액 또는 지급된 보상액에 대한 조정정책

해당사항 없음

### ③ 이연보상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해당사항 없음

(4)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 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① 전체 보상액 중 고정과 변동보상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상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고정보상액으로 분류하고, 경영진 장기성과 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은 변동 보상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② 변동보상의 지급형태

변동보상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③ 변동보상액 중 현금과 주식 등 보상간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해당사항 없음

**바. 경영진 및 특정직원 보상에 관한 세부정보**

(1)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고정보상액 주2)	변동보상액 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3년)	경영진	16	24	4	
	특정직원				
당해년도 (2014년)	경영진	13	21	5	
	특정직원				

주1) 해당년도 중 6개월 이상 경영진·특정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고정보상'으로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면 '변동보상'으로 분류

(2) 변동보상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변동보상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 상품 주2)	기타 주3)
전년도 (2013년)	경영진		4		
	특정직원				
당해년도 (2014년)	경영진		5		
	특정직원				

(3)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해당사항 없음

(4)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해당사항 없음

(5) 이연보상의 성과조정(해당년도 지급액 기준)

해당사항 없음

(6)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해당사항 없음

(7)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해당사항 없음

(8) 퇴직 고용자에 대한 퇴직보상

해당사항 없음

(9) 임직원 총보수

(단위 : 억원, 명)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전년도 (2013년)	619	1,269	48.7%	818	0.76
당해년도 (2014년)	637	1,426	44.6%	782	0.81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고정보상, 변동보상 및 고정성 복리비를 모두 포함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

[예시 : 당해연도가 2014년인 경우 2013년 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 8. 리스크관리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 관리 기본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판단을 하는 등 회사의 주요 리스크에 대해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리스크관리 전략 및 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경영진이 주요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14년 말 기준 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사내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15년 1분기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8조1항에 의거, 사내 위원회로 운영하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이사회내 위원회로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2) 구체적 역할

##### (가) 리스크관리의 기본정책 및 전략 수립

매년 초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경영지표 및 리스크량의 한도설정, 외부 환경 및 전략 등을 감안한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득한 후, 전사에 적용하고 주요 리스크 관리 전략의 실행을 독려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나)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 결정

규제 자본비율, 자기자본 대비 주요 리스크량 등을 감안하여 리스크 한도를 설정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전사수준의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고 관련 부문에 감소, 회피, 수용 등 대응전략을 수립 및 이행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다) 전사리스크 점검결과 심의

주요 리스크 관리영역인 운영리스크, 재무리스크, 사업리스크 등 각 분야별 리스크 관리현황, 주요 이슈, 대응전략 등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심의결과가 회사의 주요 활동 영역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기타

그 외 업무연속성계획 및 모의훈련 실행, 산하 리스크관련협의체 심의사항 등 리스크 관련 주요사항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1) 총괄

2014년말 기준, 사내 위원회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리스크관리총괄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내 주요 부문/본부/실 임원들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경영진이 리스크 관련 심의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서만호	상임	위원장	'14.4.1	'15.3.27
원효성	상임	위원	'12.8.27	'14.12.31
전경혜	상임	위원	'14.4.1	'15.3.27
김수화	상임	위원	'12.4.16	'14.12.31
여재성	상임	위원	'13.1.2	'14.12.31
허진영	상임	위원	'13.1.2	'15.3.27
최정훈	상임	위원	'13.5.7	'15.3.27
이정호	상임	위원	'14.4.3	'15.3.27
이경훈	상임	위원	'14.4.3	'15.3.27
최석진	상임	위원	'14.5.2	'15.3.27

##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14년 총 4회(분기별) 개최되었습니다. 4차례 위원회를 통해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모두 심의사항이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4. 2.5 (09:0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전경혜	원효성	서만호	이재용	김수화	오경섭	여재성	허진영	최정훈	천덕종	김태규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
3. 심의안건												
1호) 2014년 리스크 관리 기본계획 (안)	- 레버리지율 내부한도(안) 5.5배 이하 재검토 (이사회 안건상정 시, 5.0으로 재조정) - 운영리스크 발생 프로세스에 대해 업무 재설계 추진 요청 (‘14년 총 7분야 선정 6개 완료. 나머지 1개 분야는 ‘15년 상반기내 완료예정)											-
2호) 2013년 4분기 전사리스크 점검결과	이건 없음											-

(나)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4. 4.30 (09:0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서만호	원효성	전경혜	김수화	여재성	허진영	최정훈	이정호	이경훈		-
2. 참석여부	참석	불참	참석		-						
3. 심의안건											
2014년 1분기 전사리스크 점검 결과	- 업무연속성계획(BCP) 핵심업무복구대상 추가 여부 검토 (현 수준유지 결론)										- -

(다)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4. 8.18 (09:0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서만호	원효성	전경혜	김수화	여재성	허진영	최정훈	이정호	이경훈	최석진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심의안건												
2014년 2분기 전사리스크 점검 결과	이건 없음											- -

(라)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4. 10.27 (09:0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서만호	원효성	전경혜	김수화	여재성	허진영	최정훈	이정호	이경훈	최석진	
1. 위원 성명	서만호	원효성	전경혜	김수화	여재성	허진영	최정훈	이정호	이경훈	최석진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심의안건											
2014년 3분기 전사리스크 점검 결과	이건 없음										- -

- 리스크관리위원회 주요 안건 내용

일자	대상	안건 내용
'14. 2. 5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4년 리스크관리 기본계획 - '13년 전사리스크 관리 수준, '14년 리스크관리 목표, 한도설정, 중점추진계획 등
		2013년 4분기 전사리스크 점검결과 - 주요 경영지표, 위험자본량, 운영리스크 관리 현황, 산하 리스크관련협의체 심의내용 등
'14. 4. 30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4년 1분기 전사리스크 점검결과 - 주요 경영지표, 위험자본량, 운영리스크 관리 현황, 전사수준 리스크진단, 사업리스크 점검 등
'14. 8. 18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4년 2분기 전사리스크 점검결과 - 주요 경영지표, 위험자본량, 운영리스크 관리 현황, 전사수준 리스크진단, 사업리스크 점검 등
'14. 10. 27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14년 3분기 전사리스크 점검결과 - 주요 경영지표, 위험자본량, 운영리스크 관리 현황, 전사수준 리스크진단 등

## 9. 기타위원회

### 9-1. 경영위원회

####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비씨카드주식회사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경영상 현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내위원회로 경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전문 경영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이사 2인 (대표이사 1인, 기타비상무 이사 1인)으로 구성하여 신속하고 심도있는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한하여 심의·의결을 할 수 있으며, '경영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경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상근감사위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 규정' 제 8조에 의거하여, 경영위원회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구체적 역할

경영위원회의 부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배인 해임 및 선임
2.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나. 구성 (경영위원회위원)

##### (1) 총괄

비씨카드주식회사 경영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 위원은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 구성원 (2014년 말 기준)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서준희	상임	위원장	'14.3.25	'14.12.31
한훈	비상임	위원	'14.2.28	'16. 정기주총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4년도에는 총 1회의 경영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원의 참석율은 100%로 충실히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 내역

(가) 제1차 경영위원회 : '14. 5.28 ( 17:3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성명	서준희	한 훈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이의 없음		-
4. 의결 안건			
가. 지배인 해임 및 선임 (안)	찬성	찬성	가결

## 10. 경영관리협의회(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11. 리스크관리협의회(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12.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 (1) 사외이사 김종화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제, 금융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 관계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명망있는 교수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충실히 출석

#### (2) 사외이사 이천표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제, 금융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 관계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명망있는 교수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충실히 출석

(3) 사외이사 표학길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제, 금융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 관계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명망있는 교수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충실히 출석

(4) 사외이사 한영근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이유
1. 소극적 요건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영, 금융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이해상충 관계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역임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충실히 출석

## 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보수

### (1) 사외이사 김종화

#### (가) 활동내역

김종화 사외이사는 2014년 중 개최된 참석대상 이사회 10회 중 10회, 성과보상위원회 2회 중 2회로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개최된 위원회는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나) 보수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1,000,000	
월급여	4,000,000	12개월
상여금	-	
기타수당	3,000,000	참석여비 30만원 X 10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1,200,000	
업무활동비	1,200,000	통신비 10만원 X 12개월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 (2) 사외이사 이천표

#### (가) 활동내역

이천표 사외이사는 2014년 중 개최된 참석대상 이사회 10회 중 10회, 성과보상위원회 2회 중 2회, 감사위원회 6회 중 6회로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개최된 위원회는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1,000,000	
월급여	4,000,000	12개월
상여금	-	
기타수당	3,000,000	참석여비 30만원 X 10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1,200,000	
업무활동비	1,200,000	통신비 10만원 X 12개월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3) 사외이사 표학길

(가) 활동내역

표학길 사외이사는 2014년 중 개최된 참석대상 이사회 10회 중 8회, 성과보상 위원회 2회 중 2회, 감사위원회 10회 중 8회로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개최된 위원회에 충실히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0,400,000	
월급여	4,000,000	12개월
상여금	-	
기타수당	2,400,000	참석여비 30만원 X 8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1,200,000	
업무활동비	1,200,000	통신비 10만원 X 12개월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4) 사외이사 한영근

(가) 활동내역

한영근 사외이사는 2014년 중 개최된 참석대상 이사회 10회 중 10회, 성과보상 위원회 2회 중 2회로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개최된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보수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1,000,000	
월급여	4,000,000	12개월
상여금	-	
기타수당	3,000,000	참석여비 30만원 X 10회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1,200,000	
업무활동비	1,200,000	통신비 10만원 X 12개월
차량제공	-	
사무실제공	-	

(5) 요약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시간 (주)	
			감사 위원회		성과보상 위원회		경영 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목표	실적
배철호	2	1	4	3	-	-	-	-	-	-	-	32
김종화	10	10	-	-	2	2	-	-	-	-	-	96
이천표	10	10	6	6	2	2	-	-	-	-	-	144
표학길	10	8	10	8	2	2	-	-	-	-	-	144
한영근	10	10	-	-	2	2	-	-	-	-	-	96

(주) 활동시간 : 이사회 및 위원회 참여 1회 당 8시간으로 산정

####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 회사 전략 및 중요 경영정보 제공
- 회사 경영전략 설명 (연 8시간)
- 신임 이사 오리엔테이션 자료 제공

#### **라. 기부금등 지원내역**

- 해당사항 없음

#### **마. 임원배상책임보험 현황**

- 가입사 : 현대해상(주간사), 메리츠화재(참여사),
- 보험료 : 9.5천만원
- 보상한도 : 500억원(방어비용 포함),
- 계약조건
  - 15% 이상 대주주의 청구 보장 제외
  - 국가, 감독기관의 청구 보장 제외
  - 클레임 보고 기간 : 120일 이내 원칙
  - 손해배상금, 판결금액, 화해금액 및 방어비용 보장
  - 형사소송/변호사비용 담보(유죄 확정 시 환수)
  - 보험계약자, 자회사의 청구 보장 제외

#### **바. 사외이사 평가**

비씨카드주식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내,외부 평가 기준을 2015년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에 의거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비씨카드주식회사는 2014년에 선임사외이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15년에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지원부서 : 경영시너지팀
- 조직구성 : 부서장(총괄) 1명, 과장 2명
- 지원내역
  - 이사회 소집 통지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이사회 의사록 등 회의 내용의 기록 및 관리

아. 최근 5년 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배철호	'12.2.28	14.2.28	2년	감사위원회 성과보상위원회	감사 위원장 (주1)	전북대 석좌교수
김종화	'13.3.26	'15.3월 정기주총	2년	성과보상위원회	-	덕성여대 명예교수
이천표	'13.3.26	'15.3월 정기주총	2년	감사위원회 성과보상위원회	-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표학길	'13.3.26	'15.3월 정기주총	2년	감사위원회 성과보상위원회	감사 위원장 (주2)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영근	'13.3.26	'15.3월 정기주총	2년	성과보상위원회	-	IBK 자산운용 대표이사

주1) 재임기간 : 2013.3 ~ 2014.3

주2) 재임기간 : 2014.3 ~ 2015.3

### 13. 주주총회

#### 가. 주주현황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4,400,000주
- 자기주식현황 : 미보유
-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보통주 보유현황

구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의결제한법규
최대주주	(주)케이티	3,059,560주	69.54%	

- 주주명부 기준 1% 이상 주주 현황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주)케이티	3,059,560주	69.54%	
(주)우리카드	336,800주	7.65%	
농협은행(주)	217,800주	4.95%	
중소기업은행	217,800주	4.95%	
(주)케이비국민카드	217,800주	4.95%	
(주)대구은행	87,120주	1.98%	
(주)경남은행	87,120주	1.98%	
(주)부산은행	44,000주	1.00%	
(주)하나은행	44,000주	1.00%	
신한카드(주)	44,000주	1.00%	
우리사주조합	44,000주	1.00%	

- 연도 중 주주현황 변동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명의개서일
주주명	(주)케이티캐피탈	(주)케이티	2014.3.13
주식 수(지분율, %)	3,059,560 (69.54%)	좌동	

## 나. 주주총회 개최 현황

### (1) 2012년

구분	2012년		
	제30기 1차 임시주주총회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제30기 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11.12.28	2012.3.8	2012.7.20
개최일자	2012.1.13	2012.3.28	2012.8.6
개최장소	본사 대회의실	본사 대회의실	본사 대회의실
이사 참석	사내이사,감사 참석	사내이사,감사 참석	사내이사,감사 참석
총 주식수	4,400,000	4,400,000	4,400,000
참석 주식수	3,917,520	4,117,510	3,712,960
소요시간	20분	20분	20분
안건 (보통결의)	가. 이사 선임	가. 제29기제무제표 승인 나. 임원보수한도 승인 다. 이사 선임	가. 이사 선임 나. 임원보수한도 변경
안건 (특별결의)		라. 정관 일부 개정	다. 정관 일부 변경
의결정족수 (보통/특별)	1,958,761 / 2,611,680	2,058,755 / 2,745,007	1,856,481 / 2,475,307
찬성/반대(%)	100 / 0	100 / 0	100 / 0
의결권 행사방법	재청 및 동의	재청 및 동의	재청 및 동의

### (2) 2013년

구분	2013년		
	제31기 1차 임시주주총회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제31기 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13.2.7	2013.3.7	2013.8.23
개최일자	2013.2.26	2013.3.26	2013.9.13
개최장소	본사 대회의실	본사 대회의실	본사 대회의실
이사 참석	사내이사,감사	사내이사,감사	사내이사,상근감사위원
총 주식수	4,400,000	4,400,000	4,400,000
참석 주식수	3,800,080	3,984,721	3,831,960

소요시간	20분	30분	20분
안건 (보통결의)		가. 제31기제무제표 승인 나. 임원보수한도 승인	
안건 (특별결의)	가. 정관 변경	다. 정관 변경	가.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 (보통/특별)	1,900,041 / 2,533,387	1,992,361 / 2,656,481	1,915,981 / 2,554,640
찬성/반대(%)	100 / 0	100 / 0	100 / 0
의결권 행사방법	재청 및 동의	재청 및 동의	재청 및 동의

(3) 2014년

구분	2014년	
회차	제32기 1차 임시주주총회	제3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13.2.6	2013.3.7
개최일자	2014.2.28	2014.3.25
개최장소	본사 대회의실	본사 대회의실
이사 참석	사내이사, 상근감사위원	사내이사, 상근감사위원
총 주식수	4,400,000	4,400,000
참석 주식수	3,919,080	3,984,721
소요시간	20분	30분
안건 (보통결의)	가. 이사 선임	가. 이사 선임 나. 제31기제무제표 승인 다. 임원보수한도 승인
안건 (특별결의)		라.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 (보통/특별)	1,959,541 / 2,612,720	1,992,361 / 2,656,481
찬성/반대(%)	100 / 0	100 / 0
의결권 행사방법	재청 및 동의	재청 및 동의

## 14.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해당사항 없음

## 15.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첨부 1

# 정 관

비씨카드주식회사

##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비씨카드 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BC Card Co., Ltd.로 표시한다.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
2.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 2의2. 선불카드의 판매
3.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대행업무
5.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및 지급의 보증업무
6. 물품 및 용역의 할부구매 또는 연불구매를 위한 자금의 융통 및 지급의 보증업무
7. 물품 및 용역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할부판매 또는 연불판매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회수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업무
- 8의2. 카드(전자지급수단)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
9. 신용카드 이외의 기타 카드발급 업무
10. 채권의 발행 또는 차입에 의한 자금의 조달업무
11. 보험대리점 업무

12. 일반여행 업무
13. 통신판매 업무
14. 인터넷 사업
15.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 및 대여업무
16. 광고대행 업무
17. 기업의 경영지도 등에 관한 용역업무
18. 업무와 관련된 교육(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간행물 및 도서출판  
(2013.9.13. 본호 신설)
19.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업 (2013.9.13. 본호 신설)
  - 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20.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실시권 또는 사용권의 설정. 다만, 특정 금융상품과 관련된 디자인권 또는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이 라고 오인할 수 있는 디자인권 등은 제외 (2013.9.13. 본호 신설)
21.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 (2013.9.13. 본호 신설)
22. 전 각 호의 부대 및 관련업무
23.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업무 및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업무  
(2013.9.13. 본호 개정)

**제 3 조(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 사회의 결의로써 각 지에 지점, 영업소, 출장소 또는 대리점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bccard.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 5 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팔백만주로 한다.

**제 6 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일만원으로 한다.

**제 7 조(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는 설립시에 일십오만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8 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발행하며,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일십주권, 일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5종으로 하나, 주주의 요청에 의하여 주권을 분할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제 9 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할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 및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그 수 및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제 10 조(신주의 인수)** ① 신주의 발행시 주주는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식을 배정 받으며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3자에게 신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불구하고 공모를 통한 신주식의 발행시 신주식 인수권의 결정 및 기타 신주식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 11 조(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 배정)** ① 전 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유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유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써 종업원에게 청약직전 12개월간 지급한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한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 특별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식배정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합한 것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조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 12 조(주식의 명의개서)** ① 이 회사의 주식을 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자가 명의를 개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또는 필요시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전 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등록절차를 필한 다음 주권배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이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 13 조(질권의 등록 등)** ① 이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또는 신탁 재산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그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권 이전의 등록 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이나 표시에 대한 말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질권부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은 주주명부에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제 14 조(주권의 재교부)** ① 주권의 오손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오손·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식별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서에 상실주권에 대한 제권 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주주 등의 주소 및 인감신고)** ①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주소, 성명 및 인감을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 각 항의 제출을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수수료)**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설정 및 해지,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의 등록과 신주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7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써 2주간 전에 미리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 제 3 장 주주총회

**제 18 조(주주총회의 소집)** 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만료일로부터 3월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29조를 준용한다.

②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주주총회의 소집지는 본사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소집한다.

**제 19 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20 조(정족수 및 의결)** 주주총회의 의결은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 21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의사록의 작성 보존)**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4 장 이사회

**제 23 조(이사의 선임)** ① 이 회사는 임원으로 3인 이상의 이사를 두며,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2013.2.26 본항 신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2013.2.26 본조 신설)

**제 25 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재임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한다.

**제 26 조(이사의 보선)** ① 임기중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3조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정관 제2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013.2.26 본항 신설)

③ 보결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보결 선임된 사외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27 조(대표이사의 선임, 자문역 등)** ① 회사는 이사회에 결의로써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인 사장 1인을 선임한다.

② 사장은 회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역을 둘 수 있다. (2014.3.25. 본항 개정)

**제 28 조(경영임원)** ① 이 회사는 경영임원을 둘 수 있다.

② 경영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 회사의 분장업무를 집행한다.

③ 경영임원의 임용, 역할, 보수 및 퇴직 등에 대하여는 이 회사의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9 조(권한의 대행)**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경영임원 중에서 직급 순으로, 직급이 동일한 경우 해당 직급에서의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3.2.26 본조 개정)

**제 30 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3.2.26 본조 개정)

**제 31 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①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고, 의장의 임기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각 이사는 필요시 대표이사에게 그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이외에 이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⑥ 이사회의 의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2013.2.26 본조개정)

**제 32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 33 조(의사록의 작성 보존)**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3.2.26 본조 개정)

**제 34 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산하에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 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성과보상위원회

4. 경영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제1항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13.2.26 본조 개정)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3.3.26. 본항 신설)

**제 35 조(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위로금 지급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  
한다. (2013.2.26 본항 개정)

## 제 5 장 감사위원회

**제 36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여신전문금  
융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각 위원은 법령상 결  
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013.2.26 본  
조 개정)

**제 37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대표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2013.2.26 본조 개정)

**제 38 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3.2.26 본조 신설)

## 제 6 장 계 산

**제 39 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매

사업년도 말에 결산한다.

**제 40 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 연결재무제표
5. 전 각 호의 부속명세서
6. 영업보고서 (2013.2.26 본조 개정)

**제 41 조(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전조에 제기한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주주와 이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전 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 42 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광고)** ① 대표이사는 제40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전 항의 서류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이익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 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4 조(주주배당금)** 주주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 45 조(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전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전항의 기준일 이후 1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에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①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중간배당에 관하여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6 조(배당금의 지급시기)** ① 이 회사는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42조 제1항의 승인 또는 제45조 제2항의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제45조 제2항의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부 칙(2014. 3. 25)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내규의 개정)** 회사 타 내규 상의 '고문'은 '자문역'으로 변경한다.

## 부 칙

**제 1 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내규)** 이 회사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이외의 무집행에 필요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를 제정한다.

**제 3 조(사업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 조(발기인)** 이 회사설립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제 5 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당시 재임 중에 있는 임원의 임기는 개정정관 제24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 7 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198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1988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9 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198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10 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199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11 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 12 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13 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14 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15 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 16 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 17 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18 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9. 13)**

이 정관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